

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0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7. .

제출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,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 지원,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 등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안 제2조: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정비
나. 안 제2조의2: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(신설)
다. 안 제3조: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정비
라. 안 제4조: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
마. 안 제6조: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추가
바. 안 제8조: 적극행정위원회 간사 변경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5. 예산수반 사항: 해당 없음

6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7. 입법예고

- 가. 예고 기간: 2026. 6. 24.~2026. 7.14.(20일간)
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
- 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동의

9. 참고사항: 해당 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경제기획관 규제개혁과

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 “ 시장” 이라 한다)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7조제1항” 을 “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75조의2제1항” 으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전담부서의 지정) ① 시장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총괄·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,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.

②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)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남시 적극행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제2항 중 “되고, 부위원장은 인사부서 담당국장이 된다” 를 “된다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공공부분 또는 민간부분” 을 “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재적위원” 을 “제5항에 따

른 구성원” 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제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청취하거나” 를 “듣거나” 로 한다.

⑦ 위원장은 인가·허가·등록·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중 “간사를” 을 “간사” 로, “영 제6조” 를 “제2조의2제1항” 으로, “책임관” 을 “전담부서의 담당팀장” 으로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대해서는 예산” 을 “대해서는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기획조정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기획조정과장 채 상 호
	팀장 직위 · 성명	대외협력팀장 박 성 길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박 지 영 (031-790-5084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<u>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</u> ②·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5조의2제1항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2조의2(전담부서의 지정) ① 시장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총괄·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,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. ②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한다.
제3조(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영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	제3조(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)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

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남시 적극행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

3.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4.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

5.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
제4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인사부서 담당국장이 된다.

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남시 적극행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1. · 2. (생 략)

3. 공공부분 또는 민간부분의
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
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4. (생략)

④ · ⑤ (생략)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
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으로 의결한다. <단서 신설>

⑦ 위원장은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하게 할 수 있다.

③ _____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----

4. (현행과 같음)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제5항에 따
른 구성원 -----

----- . 다만, 영 제11조
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
· 의결할 수 있다.

⑦ 위원장은 인가·허가·등록·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

⑧ 위원장은 필요하면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 (위원의 해촉(解囑))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을 두며,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

의견을 회신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⑧ -----

----- 듣거나-----

-----.

제6조(위원의 해촉(解囑) -----

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8조(간사) -----
----- 간사 -----
----- 제2조의2제1항-----
----- 전담부서의 담당 팀장-----
--.

제9조(수당 등) -----
----- 대해서는 「하남시 각

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.

중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에 따라 예산-----
-----.

-----.

관련 법령 및 조례

1

「지방공무원법」

[시행 2026. 6. 2.] [법률 제21736호, 2026. 6. 2. 일부개정]

제75조의2(적극행정의 장려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(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(시·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)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,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
3.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제6조(전담부서의 지정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.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
2.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
3.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4.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
5.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
6.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
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2. 시·군·구의 경우: 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

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,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. <개정 2020. 8. 25.>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
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(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)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⑦ 위원장은 인가·허가·등록·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1조의3(위원의 해촉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